

의료원 산학협력단 운영 규정

제정 2012. 9.13
개정 2020.11.20
개정 2021. 4.23
개정 2022. 4.14
개정 2022. 9.29
개정 2024. 3.12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한림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학칙과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에 따라 한림대학교의료원 산학협력단(이하 “의료원산학단”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업무) 의료원산학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학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2. 산학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3. 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
4. 대학 및 의료원의 연구시설, 기자재, 인력 등의 공동활용에 관한 업무 지원
5.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6. 산학협력수요 및 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홍보
7. 산학협력사업 관련 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
8. 기타 산학협력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 2 장 조직 및 운영

제 3 조 (의료원 산학협력단장) ① 의료원 산학협력단장(이하 “단장”이라고 한다)은 교원 중에서 의료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의료원산학단을 대표하며, 사무전반을 통할한다.

제 4 조 (하부조직) ① 의료원산학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산학협력팀, 기술사업화팀, 한림대의료융합센터를 둔다.

② 한림대의료융합센터에 센터장을 두며 교원 중에서 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은 한림대의료융합센터를 대표하여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사무전반을 통할한다.

제 5 조 (산학협력팀) 산학협력팀은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산학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2. 의료원산학단의 회계관리
3. 연구기금 및 연구 간접비 관리
4. 외부연구비에 따른 연구활동의 지원
5. 외부연구비 신청 및 관리
6. 연구기금 및 연구비 조성과 운영
7. 산학협력수요 및 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홍보

8. 기타 산학협력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 6 조 (기술사업화팀) 기술사업화팀은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지식재산권 취득 및 관리
2. 지식재산권 활용계획 수립 및 시행
3.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4. 기술 사업화를 위한 네트워킹 및 마케팅 업무
5. 산업자문 계약체결 및 관리 업무
6. 수요기업 및 신사업 발굴
7. 연구지원 컨설팅 및 상담

제 7 조 (한림대의료융합센터) 한림대의료융합센터는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입주기업 관리
2. 기업연구소와의 공동연구
3. Technology Readiness Level 4단계 이상의 국가연구과제 제안서 작성 지원
4.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관리
5. 기술이전 및 사업화

제 8 조 (권한의 위임) ①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은 ‘별표 1’ 과 같다. 다만, 예산에 관한 편성 및 위임전결 사항은 의료원산학단 예산관리지침으로 정한다.

② 의료원산학단 연구지원, 예산편성 및 통제, 지출 및 결산, 구매 및 시설설치업무는 의료원 및 대학본부 관련 부서에 위임할 수 있다.

제 3 장 위 원 회

제 9 조 (운영위원회) ① 의료원산학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료원산학단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2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의료원 임상의학분야 교원 중에서 의료원장의 추천으로 단장이 임명한다.

제 10 조 (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학협력의 기획·조정
2. 의료원산학단의 예·결산에 관한 사항
3. 각종 규정 및 세칙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4. 의료원산학단 연구비(사업비) 조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5. 기타 수익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기타 의료원산학단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 11 조 (회의) 운영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2 조 (보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4 장 재 정

제 13 조 (수입) 다음 각 호의 재원을 의료원산학단의 수입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산학협력 계약에 따른 수입금
3. 산학협력 성과에 따른 수익금

- 4. 산학협력에 관하여 접수한 기부금품
- 5. 기술지주회사로부터의 배당 및 그 밖의 수입금
- 6. 이자수입
- 7. 의료원산학단 소유의 연구시설과 실험 실습시설 및 장비에 대한 사용료
- 8. 기타 산학협력사업에 따른 수입금

제 14 조 (지출) 의료원산학단은 다음 각 호의 지출을 할 수 있다.

- 1. 의료원산학단의 관리·운영비
- 2. 산학협력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
- 3. 의료원의 시설·운영 지원비
- 4. 수입에 기여한 사람에 대한 보상금
- 5.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출자
- 6. 산학협력 관련 협의회 등의 사업비 및 운영지원비
- 7. 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 8.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 9. 기타 산학협력에 필요한 경비

제 15 조 (회계연도) 의료원산학단의 회계연도는 한림대학교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 16 조 (회계관리) ① 의료원산학단의 회계는 산학협력에 관한 법령이나 산학협력에 관한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원별 또는 사업단위별로 별도의 계정을 두어 관리할 수 있다.

② 회계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의료원산학단의 연구비 관리 규정, 간접비 관리 운영지침, 예산 관리 지침에 따른다.

제 5 장 보 칙

제 17 조 (규정변경) 이 규정은 의료원산학단 운영위원회 및 대학 교무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제 18 조 (세부사항) 이 규정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7-5-13~4 산학·지역협력기관 및 학교기업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2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의료원 산학협력단 위임전결사항

부서	소관업무내용	총장	전결권자			비고
			산학 단장	부서장 (의료원 산학단장)	보조 기관장	
의료원 산학 협력단	1. 의료원 산학협력단 운영 총괄계획 수립		○			
	2. 의료원 산학협력단 운영 결과 보고		○			
	3. 의료원 산학협력단 신규사업 신청					
	가. 대응(자금, 공간 등)이 필요한 사업(단/팀) 성격의 신규사업 신청시			○		
	나. 대응(자금, 공간 등)이 필요 없는 사업(단/팀) 성격 의 신규사업 신청시			○		
	다. 개인연구비 성격의 신규과제 신청시			○		
	4. 의료원 산학협력단 신규사업 선정 보고			○		
	5. 의료원 산학협력단 계속추진사업 연차별 결과보고			○		
	6. 의료원 산학협력단 추진사업 최종 결과보고			○		
	7. 산업체 업무협약(MOU 체결) 업무			○		
	8. 의료원 산학협력단 인력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9. 지식재산권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		
	10. 지식재산권 제반 비용 집행					
	가. 지식재산권 국외 출원비			○		
	나. 지식재산권 국내 출원·등록 및 유지관리비			○		
11. 기타 각호의 진행에 부수적인 업무				○		